

주식회사 동방

정관

D**ONGBANG**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동방(이하 이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ONGBANG TRANSPORT LOGISTICS CO. LTD.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물취급업
2. 보관 및 창고업
3. 도시간철도운송업, 철도소운송업
4. 도로화물운송업, 자동차운송알선업
5.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운송대행업
6. 항공 및 해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7. 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해운대리점업
8. 자동차(중기)수리 및 부품(부속품)판매업
9.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10. 육상 및 수상 운수장비임대업
11. 육상 및 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
12. 건설장비 및 토목공사용장비임대업
13. 토목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공사업
14. 차량용연료소매업
15.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16.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17. 무역 및 통관업
18. 제조 및 도소매업(유통업)
19.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20. 자동차제조 및 도소매업
21. 금속처리업
22. 인력 및 고용알선업

23.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24. 운동설비운영 및 음식점업
25. 우편물송달 및 전기통신업
26.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27. 종합물류업
28. 소화물일관수송업
2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1. 정보통신공사업
32.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사업
33. 해상여객운송사업
34. 선내판매업 및 물품공급업
35. 부품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36. 항만운송관련 사업
37. 국제주선업
38. 자동차 세차업
39. 하수 및 폐수 처리업
40. 경영컨설팅업
41. 수중공사업
42. 철강재설치공사업
43. 전기장비 제조, 판매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업
4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5. 각종 무점포 소매업 및 중개업
46. 광고업
47. 통신판매 관련 사업
48. 냉장 및 냉동 창고업
49. 위험 물품 보관업
50. 전기공사업
51. 기타 전문건설업
52. 위 각호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본점 및 지점 등의 소재지)

①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ngban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0 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7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되,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③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④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어느 사업연도에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무의결권 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7 조의 3(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7 조의 4(상환주식)

①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되나, 제 7 조의 2 제 8 항의 우선주식 존속기간까지를 한도로 하여 그 기간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제 7 조의 3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7 조의 5(상환전환주식)

이 회사는 제 7 조의 3 및 제 7 조의 4 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주식에 대하여는 위 제 7 조의 3 및 제 7 조의 4 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제 8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또는 액면총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2 삭제

제 8 조의 3(동등배당)

이 회사가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9 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삭제

제 11 조(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2 조(사채의 발행)

-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2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8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8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6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3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8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8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행사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6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9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5 조(소집시기)

-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정기주주총회는 제 11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6 조(소집권자)

- ①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의장)

-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외 1 개 일간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1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1 조의 2(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2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인 주주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 24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제 26 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이상 8 명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7 조(이사의 선임)

-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로 될 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하로 하며,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9 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6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 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1 조(이사회 의장 및 이사의 직무)

-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대표이사가 아닌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의 2 삭제

제 31 조의 3(이사의 보고의무)

- ①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4(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감사의 직무) 조 삭제 (제 6 장 감사로 조 이기)

제 33 조(감사의 감사록) 조 삭제 (제 6 장 감사로 조 이기)

제 34 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 2 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35 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6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이사회 운영)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36 조의 3(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ESG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위원회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7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8 조 삭제

제 6 장 감사

제 38 조의 2(감사의 수와 선임)

- ①이 회사의 감사는 1 명으로 한다.
-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의 3(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8 조의 4(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8 조의 2 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의 5(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제 38 조의 6(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7(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계 산

제 39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동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1 조의 2(주식의 소각) 삭제

제 42 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 7 조의 2 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43 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4 조(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45 조(준용규정)

-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의 2, 제 11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2 조의 2, 제 33 조, 제 34 조, 제 37 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 예)

제 13 조 및 제 14 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7 조 제 3 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의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조의 2, 제 12 조, 제 12 조의 2, 제 31 조의 2, 제 35 조, 제 40 조, 제 41 조의 2, 제 42 조, 제 42 조의 2 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 각 한도는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의2 및 제14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3항 및 제42조 2의 개정내용은 2024년 사업연도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